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53
------	------

제출일자 : 2022. 11. 10.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제명의 띄어쓰기 정비 및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한 조례를 일괄정비하여 한글맞춤법 어문 규정을 준수하고 구민들이 조례 제명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띄어쓰기 정비

-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
- 「서울특별시금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 「서울특별시금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 「서울특별시금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 「서울특별시금천구아동위원회의회조례」
- 「서울특별시금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 대한보상금지급조례」
- 「서울특별시금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
- 「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공인조례」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일본식 한자어 순화 (감안 → 고려)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7조제2항, 제3항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9조제2항
-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1조제1항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국어기본법」 제4조제1항

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생략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2)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대상아님(민원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가족정책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서비스현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서비스현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금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금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금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금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금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금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금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금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금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서울특별
시 금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금천구아동위원회의회조례」의 개정) 서울특별
시금천구아동위원회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금천구아동위원회의회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위원회의회 조례”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금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
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금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금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금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직및운영에관
한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금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직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금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공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공인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인 조례”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항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

제9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의 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u>	<u>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u>

제2조(「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별정직공무 원인사관리조례</u>	<u>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별정직공 무원 인사관리 조례</u>

제3조(「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서비스헌장 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u>	<u>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서비스헌 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제4조(「서울특별시금천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금천구공무원직장협의 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u>	<u>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직장협 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u>

제5조(「서울특별시금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금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u>	<u>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u>

제6조(「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u>	<u>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u>

제7조(「서울특별시금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금천구규제개혁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u>	<u>서울특별시 금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u>

제8조(「서울특별시금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금천구아동위원협의회 조례</u>	<u>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u>

제9조(「서울특별시금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금천구무허가건물정비 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u>	<u>서울특별시 금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 례</u>

제10조(「서울특별시금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직및운영에관
한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금천구지역보건의료심 의위원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u>	<u>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제11조(「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 례</u>	<u>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u>

제12조(「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공인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공인조례</u>	<u>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인 조 례</u>

제13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

영예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37조(운영) ① (생략)</p> <p>② 주민자치회는 원활한 자치회관의 운영을 위해 봉사하는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u>감안하여</u> 제40조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중 일정금액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p> <p>③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되, 제4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u>감안하여</u>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④ (생략)</p>	<p>제37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고려하여</u> ----- ----- ----- -----.</p> <p>③ ----- ----- ----- ----- ----- <u>고려하여</u> ----- ----- -----.</p> <p>④ (현행과 같음)</p>

제14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생략)</p>	<p>제9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법인의 운영능력을 <u>감안하여</u>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자원봉사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 ⑨ (생략)</p>	<p>②----- ----- ----- <u>고려하여</u> ----- ----- ----- ----- ----- -----.</p> <p>③ ~ ⑨ (현행과 같음)</p>
---	--

제15조(「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6조(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 ③ (생략) ④ 평생교육센터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 이용정원 등은 해당 시설의 수용능력, 교육과정의 규모, 특수교육 강사확보 등을 <u>감안하여</u>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 (생략)</p>	<p>제6조(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u>고려하여</u> ----- -----.</p> <p>⑤ (현행과 같음)</p>

제16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생략)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 지여건을 <u>감안하여</u> 위험도 평가 기간을 구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현행 과 같음) ② ----- ----- <u>고려하여</u> ----- -----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명의 띄어쓰기 정비 및 일본식 한자어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 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예산과 의회법제팀 최민혜
연 락 처	2627 - 1110

관 련 법 령

국어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규문서: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 등에 관한 문서
2. 지시문서: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3. 공고문서: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4. 비치문서: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 카드 등의 문서
5. 민원문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
6. 일반문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

제7조(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①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②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